

외국의 지방재정 정보공개 제도

- 일본을 중심으로 -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 론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 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민참여의 확보, 주민의 신뢰성 확보, 참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실현, 주민의 권익과 이익의 보호,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각종 정책결정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투명성과 책임성의 측면

에서 중요하다. 행정정보공개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재정의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년 2회 정도 주민에게 다양한 공개방법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공개에 대한 의무제도 이외에도 자료실·도서실의 열람, 행정 간행물의 배포 등에 의한 임의적 공개제도, 홍보지·백서발행 등의 홍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정보공개 제도의 체계 및 정보공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 일본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의 내용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경도는 최근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민의 알권리가 정보공개 제도의 제도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을 인식하고 도(都)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보공개를 한층 진전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에 즈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의 추진과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열린 도정을 실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적 차원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 대하여 보고 또는 공표하는 것으로 재정공개주의 원칙에 바탕하는 것이다(박문옥, 1995:5). 정보공개는 정부와 주민의 입장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하는 소극적 의미의 정보공개와 청구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부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표 또는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넓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이상용, 1997:5) 따라서 지방재정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소극적 공개와 자발적인 정보공표 및 정보제공의 적극적 공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틀이 된다. 결국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방재정공개제도는 필요하며 그 운영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II. 지방재정 정보공개에 의의

1. 개념과 필요성

지방재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지방의회, 국민(주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상황

2. 공개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재정보고서(report)라는 간행물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web site), 신문 등의 광고지, 열람, 강연,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메일, 편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다.

3. 공개주체 및 공개내용

지방재정의 공개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제3의 기관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공개주체에 따라 재정정보의 공개 내용의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현황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공개 및 자발적인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재정정보의 내용은 세입·세출의 상황, 재산, 주민부담, 지방채 및 채무관리 계획, 기금, 공기업 등이나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주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특정한 내용은 시·계열, 중앙 및 타 단체와의 비교 공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청구공개에 의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의 정보는 지방재정에 대한 총체적인 현상이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분석의 자료로 작성되어 공개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정보공개에 관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지수표」가 공개된다. 영국의 경우도 성과지표(재정성과지표 포함)들이 공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재정종합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정보가 비교되어 공개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정보공개는

개별 단체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비교·평가하여 공개한다.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정보공개는 이러한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는 재정정보의 전산화에 기초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셋째, 제3자에 의해 재정정보가 공개된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지방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Ⅲ. 일본의 지방재정정보 공개제도

1. 지방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43조 3(재정상황의 공표 등)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재산,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고, ③ 기타 재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해야 할 재정상황의 내용,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회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에 대하여도 매 사업 년도마다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계약 등 신탁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으로 정한 계산기마다 관련신탁과 관계된 사무의

처리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및 그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재정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후술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30조의 2(지방재정의 상황의 보고)의 규정에서 내각은 매년도 지방재정의 상황을 밝히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재정백서」이다. 이 보고의 원안을 작성하는 것은 일본 총무성(구 자치성)의 권한이며 그 내용은 지방재정의 결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무대신이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국회보고의 원안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총무성에 두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백서는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총무성에서는 지방재정백서 및 후술하는 지방재정의 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재정의 개요’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일반 일간지에 공개함으로써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정확하게 지방재정의 역할, 현재의 상황 및

주요 지방재정의 이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단체, 그리고 지방재정의 당면과제 및 대책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재정백서의 영문판인 White Paper on Local Public Finance를 간행물 및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백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지방재정의 비중 등 지방재정의 역할, 총결산규모, 결산수지 및 적자단체, 세입구성, 세출구성, 지방채 및 경상수지비율 등의 지표에 의한 재정구조의 탄력성 상황, 장래재정부담상황,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경영상황,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의 과제 등이다.

3)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7조(세입세출액의 건적액 제출 및 공표의 의무)의 규정에서 내각은 매년도마다 익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건적액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각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입 건적액 및 다음 각 호의 내역

- ① 각 세목별 과세표준액, 세율, 조정건적액 및 징수건적액
- ② 사용료 및 수수료
- ③ 기채액
- ④ 국고지출금
- ⑤ 잡수입

둘째,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적액 및 다음 각 호의 내역

- ① 세출의 종류별 세출액 및 전년도에 대한 증감액
- ② 국고지출금의 경비 총액
- ③ 지방채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금

이는 당해 연도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의 실태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정식으로 ‘지방재정의 상황’이라는 제명으로 보고되고 공개되는 것이다. 총무성에서 작성하는 지방재정의 상황은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역할, 즉 정부지출에서 지방재정의 비중 및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의 현 상황인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과 특징을 지표를 통해 시계열로 분석하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채 및 경상수지비율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현재 일본 지방재정의 재정경직화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 주고 있다. 셋째,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계획의 포인트와 개요, 재정계획의 방침 및 자료, 재원대책의 포인트와 개요, 부족재원 대책 및 지방재정대책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넷째, 지방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증감을 표시하여 주고 있다.

4) 지방재정재건축진특별조치법

지방재정재건축진특별조치법 제4조(재정재건계획의 공표)의 규정에서 재정재건단체는 재정재건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재건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5) 지방공영기업법

지방공영기업법 40조의 2(업무상황의 공표)에서 지방공영기업의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적어도 2회 이상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것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영기업의 관리자가 지출해야 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영기업법시행령 제25조의 2(기금 운영에 대한 상황제출)에서 지방공영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목적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그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산을 근거로 작성되며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및 결손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일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43조의 3 제1항의 재정운영상황의 주민에 대한 공개의 의무화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총무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의 공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공개회수, 공개내용, 비공개 항목, 공개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회수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4회의 공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재산의 현재액, ③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④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① 경영상황, ② 사업계획 및 예산, ③ 결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실적보고서 등)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방법은 조례로 정하되 주민접근이 용이한 예를 들면 공보, 인쇄물, 강연, 신문, TV 등의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계표나 도해(圖解)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장려하고 있다(이상용, 1997:16).

동경도(東京都)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중 공표시기의 규정을 보면 재정상황의 공표는 6월과 12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표사항을 보면 6월에 공표하는 재정상황의 공표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주민부담의 개요, ③ 공영기업업무의 상황, ④ 재산, 공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고, ⑤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재정운영의 방침 및 재정

운영의 동향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2월의 공표는 동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①~⑤ 사항과 전년도 결산의 개요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정상황을 공표하는 경우 관련 기초자료 모두를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동경도 공보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치현(愛知縣)의 경우도 공표시기는 동일하나 공표사항은 재정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표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유사하며 공표방법도 공보를 통하여 공표하는 방법을 취하여 동일하다. 하지만 아이치현의 경우 공개방법이 공보의 공표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이 게재된 공보는 공표일로부터 1년간 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상황을 게재한 공보는 현청 및 각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자는 접수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일정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시(名古屋市) 재정사정(財政事情)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정사정의 공표시기를 3월 31일과 9월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공표방법은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총무성의 지침 및 다른 자치단체의 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3월 31일의 공표에서는 익년도 예산의 개요, 9월 30일의 공표에서는 전년도 수지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공표조례의 내용

구분	충무성지침	동경도
공 개 회 수	- 원칙 - 2회(상·하반기로 구분) - 매년 분기별로 4회도 가능	2회 - 6월과 12월 중 시행
공 개 내 용	- 조례로 구체적 내용 명시하되 예산과 결산으로 구분하여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재산의 현재액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법인 - 경영상황 - 사업계획, 예산 - 결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실적보고서 등)	6월 : 전년도 10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와 재정운영의 방침 및 재정운영의 동향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주민부담의 개요 - 공영기업업무의 상황 - 재산, 공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고 -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월 :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위의 각호와 전년도 결산의 개요
공 개 방 법	- 조례로 정하되 주민접근이 용이한 매체활용 - 공보, 인쇄물, 강연, 신문, TV 등 - 통계표, 도해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관보에 게재할 수 있음	공보에 게재

자료 : 이상용,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p. 16 참조 작성

3. 동경도 「정보 공표제공제도」

동경도는 최근 정보공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공문서 개시(開示)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보다 확대된 정보공개조례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공개の内容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과거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제공으로 탈바꿈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동경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과정과 내용을 살펴본다.

동경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동경도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도민들의 청구에 응해서 동경도가 보유하는 정보를 개시하는 공문서개시제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도가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도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면도 있다. 또한 동 조례는 개시청구(開示請求)를 기다리지 않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동경도정보공개조례는 정보공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다. 동경도는 1998년 7월 1일부터 ‘동경도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요강(要綱)’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제공에 노력하여 왔지만, 정보공개조례 및 관계규정에 공표·제공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기 때문에 동 요강은 1999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였다.

동경도에서 이러한 정보공개의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경도가 도정에 관해 도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무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민의 이해와 비판하에서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도민에 의한 도정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도민의 이해와 비판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추진하고 도민에 의한 도정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공문서 개시에 관한 조례를 정보공개조례로 개정하면서 정보공개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대하여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을 확대시키고 대상문서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동경도 정보공개의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동 조례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은 공문서 개시 및 공문서 임의적 개시를 규정하여 과거 공문서 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도의 책무, ② 정보공표제도, ③ 정보제공시책의 확대, ④ 출자법인 등의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의 ②~④의 제도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 및 기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자문·의견청취할 수 있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동경도 「정보공표·제공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크게 정보공표제도, 정보제공제도, 공표·제공정보 일람표 운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정보공표제도는 동경도 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표된 정보는 인터넷 이외에 도민정보룸(청사 내 설치)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도의 장기계획, 기타 중요한 기본계획 (일정한 것은 중간단계의 안도 공표)
- ② 심의회 등의 보고서, 의사록, 제출자료
- ③ 도의 주요사업의 진행사항
- ④ 기타 외곽단체의 사업개요 및 재무상황 등

2. 정보제공제도는 도정정보를 인터넷,

<표 2> 공표·제공정보 일람표(재무·세무분야 사례)

공 표	제 공	자료명칭	공표 제공 일시	공표·제공방법					부 서 명	전 화
				주무 과	도 민 정보룸	동 경 도 홈페이지	각 부 서 홈페이지	기타		
	◦	입찰정보서비스 (입찰경과과정)	02. 4. 1	◦		◦	◦	주관과 수시변경		
	◦	동경도재생도채 발행	02. 6.23	◦		◦	◦	신문발표		
	◦	♫미이용지 활용	02. 4.25	◦			◦	신문발표		
	◦	도유지매각예정물건	02. 4. 1	◦			◦			
	◦	일반경쟁입찰·공모에 의한 도유지 매각	02. 6.28	◦			◦			
	◦	도세·월분	02. 6.28	◦	◦		◦			
	◦	자동차세납기내 납부캠페인	02. 5. 8					신문발표		
	◦	동경도세제조사회의 개최	02. 6. 6				◦	신문발표		
	◦	공급수납취급금융기관	02. 4. 1				◦			

광고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 ①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사발언 등, 도의 시정방침
- ② 도의 조직이나 직원의 정수, 급여에 관한 정보
- ③ 지역개발이나 주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④ 환경보건위생, 방재 등 도민생활의 안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정보
- ⑤ 도가 행하는 시험, 행사에 관한 정보
- ⑥ 기타 각 부서의 사업정보 등,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

3. 공표·제공정보 일람표는 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3개월에 1번씩 일람표를 작성하

여 인터넷에 등록하고 도민정보룸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제공정보일람표 중 재무·세무분야의 사례를 보면 <표 2>와 같다.

동경도의 재정에 대한 공개는 이상과 같은 정보공표·제공제도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재정정보는 인터넷상으로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도민정보 룸에 재정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재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동경도의 경우 인터넷상의 재정정보 제공은 도재정·도채(都債), 당해연도 예산안의 개요,

보통회계 결산, 재정재건프로그램, 대차대조표(밸런스시트), 자금관리방침, 계약공사 관련 입찰정보서비스, 도세가이드북, 계좌조이체 안내, 구매정보, 세제조사보고서, 공유재산, 공영기업의 개요, 각종 재정제도 등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재정관련 정보공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 공개청구에 응하는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의 추진과 주민참여의 촉진, 열린행정 실현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민에게 행정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낫은 행정이 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선진국의 추세(여기서는 일본)에 비하여 부족한 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체계가 잘 갖추어

져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백서, 지방재정상황 등 지방재정전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에서 지방재정정보공개에 관한 지침과 대차대조표(밸런스시트), 행정코스트 작성에 대한 지침을 주어 이러한 재정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앙차원에서 집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크게 갖고 과거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조례로 전환하여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지역주민에게 공표 내지는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지방재정정보공개 제도의 발전 및 실제 시행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기, “지방재정정보공개의 내용과 방법”, 「지방재정」, 제14권 제5호(통권 제7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 박문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정보공개”, 「지방재정」, 제14권 제5호(통권 제7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 이재성,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재정」, 제14권 제5호(통권 제7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윤영진,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활용방안”,
 「지방재정」, 제14권 제5호(통권 제
 7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
 임성일, “외국의 지방재정정보 공개제도-영
 국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제14
 권 제5호(통권 제76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1995
 이상용,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도

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日本 地方自治法, 地方財政法, 地方交付稅法,
 公營企業法, 財政再建特別措置法.
 宇賀克也, “東京都情報公開條例の制定”,
 「自治研究」, 第75巻 第5號, 1999.
 總務省 홈페이지
 東京都情報公開條例, 홈페이지
 愛知縣情報公開條例, 홈페이지
 明古屋情報公開條例, 홈페이지